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7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서미화·안규백·이기헌

황정아 • 조인철 • 박지원

이재관 • 박정현 • 이병진

이연희 · 한병도 · 강준형

박희승 • 박해철 • 채현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 건법」 등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응급처치 제공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 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 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형당뇨병
- 2) 제2형당뇨병
- 3) 기타 당뇨병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하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 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	1		
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			
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당뇨병	ㅁ}		
<u><신 설></u>	<u>1) 제1형당뇨병</u>		
<u><신 설></u>	<u>2) 제2형당뇨병</u>		
<u><신 설></u>	<u>3) 기타 당뇨병</u>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3조의2(심뇌혈관질환 전문인		
	력의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		
	질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권역심뇌		
	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		

관질환센터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